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정춘생 · 황명선
이혜민 · 정준호 · 박희승
김준형 · 이학영 · 서삼석
황운하 · 손명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서,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.

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자녀를”을 “자녀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